

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
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0. 8.
제안자 : 이한구·이재병 의원
(찬성자 36인)

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,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함.
-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,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.
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, 농민 보호가 필요함.
-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함.

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12개월
※ 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- 활동범위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민관협력기구 활동 지원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예산확보 방안 모색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생산기반 조성 지원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지역 유통시스템 조성 지원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식자재 검증시스템 조성 지원
 -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관련 조례 제정 등

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5. 관련규정

- 헌법 제31조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
관련법규 발췌

대한민국헌법

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
지방자치법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 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